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8
----------	-------

제출년월일 : 2014. 10. 17.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사유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안 제24조제1항 별표)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신설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3일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 사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9. 18 ~ 2014. 10. 8(제출된 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 10. 14)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u>건강진단</u>을 할 때</p> <p>6. ~ 9. (생 략)</p> <p>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p> <p>② <u>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23조(공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건강검진</u>-----</p> <p>6. ~ 9.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인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u></p>

③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6. (생략)

⑪ ~ ⑬ (생략)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

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 유산-----

1. ~ 6. (현행과 같음)

⑪ ~ ⑬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 비교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비교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붙임 : 경조사휴가 일수표 1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경조사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확대, 한 번에 두명 이상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사용 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재선
연 락 처	02-3153-8212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1

(2014. 10. 3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10월 21일

4.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동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직원의 경조사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적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조사 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휴가 일수를 조정(신설, 확대)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 또한, 2014.6.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44일(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안 제24조제1항 별표)

=>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평균 휴가 일수로 확대 및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신설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3일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신설

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 사용(안 제24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우리 구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평균 경조사별 휴가일수 보다 적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조사 휴가 대상은 확대하고 휴가 일수는 늘려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가)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 결혼 경조사 휴가는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사망 경조사 휴가는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 나) 휴가 일수 확대 =>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2일 => 3일로 확대하고
 - 다) 휴가 일수 1일 신설 =>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을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임신·출산 여성공무원의 모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됨.

- 동 조례안은 2014. 9. 18. ~ 10. 8.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이번 조례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있는 직원 휴가일수 조정 및 상위 관계법령 등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2800호, 2014.10.15,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418호, 2014.6.30. 일부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무 조례

[조례 제963호, 2014.4.24. 일부개정]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3.12.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시 · 자치구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휴가 일수	시행 자치구	미시행 자치구	비고 (조례 개정 반영 사항)
결 혼	본인	5일	26	-	
	자녀	1일	26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1	5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송파)	1일 신설
출 산	배우자	5일	26	-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26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26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21	-	2일 => 3일 확대
		2일	5 (마포, 성북, 양천, 구로, 송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1 (동대문)	-	
		1일	22		
			3 (마포, 구로, 송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서만 1일 휴가실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22	4 (마포, 서대문, 구로, 송파)	1일 신설	
입 양	본인	20일	26	-	